

심사보고서

【남양주시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
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】

의안 번호	391
----------	-----

2024. 3. 21.

도시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. 3. 6. / 이진환 의원 등 12명

나. 회부일자 : 2024. 3. 6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4. 3. 21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공동주택(500세대 이하 포함) 월패드 해킹 및 사생활 침해 범죄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‘홈네트워크 보안가이드[과학기술정보통신부·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]’에 기재된 공인시험기관의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규정하여 안정성과 보안성이 확인·검증된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를 통해 시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공동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제정의 목적, 정의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함. (안 제1조~제3조)
- 홈네트워크 안정·보안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. (안 제4조)

- 홈네트워크 설비 및 보안 설치·유지·관리 기준과 안정성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. (안 제5조, 제6조)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조공선)

- 2021년 11월 ‘월패드 해킹 아파트 명단’ 이 공유되며 ‘월패드 카메라 해킹 의혹’ 발생으로 보안 취약 등으로 인해 발생 될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자 국회정책토론회, 비상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꾸준히 논의됨.
- 적합한 제품의 인증기준과 제품 사용에 관한 제도적 장치의 부재와 기설치된 월패드(홈네트워크)를 인증받은 제품으로 재설치 시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남아 여전히 사생활이 노출되는 상황임
- 본 조례는 증가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이용자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고, 더욱이 대규모 인구 유입이 예정된 3기 신도시 왕숙지구 등 공동주택에 설치될 홈네트워크의 안정성 및 보안성 유지를 위해 「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」에 따라 ‘홈네트워크 보안가이드’에 기재된 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여 사생활을 보호하고 공동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한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 됨.

4. 질의·답변 요지

-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

- 없 음

6. 심사결과

○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 음